

[별표 20의3] <신설 2004.4.20, 2006.5.3>

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(제56조의4제1항관련)

보고자 및 보고사항	보고받는 자	서 식	보고기한
1.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가. 거래상황기록부 나. 안전관리현황기록부	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	별지제38호서식 별지제39호서식	매분기익월15일 매분기익월15일
2.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자(영업소설치허가를 받 은 자에 한한다) 가. 거래상황기록부 나. 시설개선현황기록부	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	별지제40호서식 별지제41호서식	매분기익월15일 매분기익월15일
3. 보고자는 직접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할 수 있다.			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·도지사(시·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합니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하여는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도 통보하여야 한다.			
비 고			
1.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·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.			
2.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중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	